**「방송법」**

[법률 제70호, 2015.5.22. 최종개정]

**□ 개 요**

일본국 방송법은 전전(戰前)의 전선전신법을 대신하는 법률로서 전파법, 전파감리위원회설치법과 함께 전파 3법 중 하나로 1950년 공포, 시행되었다. 방송프로그램·일본방송협회·방송사업자 규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총 11장 193조로 이루어져 있다.

**□ 목 차**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第一章　総則**第一条 目的第二条 定義**第二章** **放送番組の編集等に関する通則**第三条 放送番組編集の自由第四条 国内放送等の放送番組の編集等第五条 番組基準第六条 放送番組審議機関(~第七条)第八条 番組基準等の規定の適用除外第九条 訂正放送等第十条 放送番組の保存第十一条 再放送第十二条 広告放送の識別のための措置第十三条 候補者放送第十四条 内外放送の放送番組の編集**第三章** **日本放送協会****第一節　通則**第十五条 目的第十六条 法人格第十七条 事務所第十八条 定款第十九条 登記**第二節　業務**第二十条 業務第二十一条 外国人向け協会国際衛星放送の業務の方法第二十二条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等への出資第二十三条 業務の委託第二十四条 基幹放送業務の認定の特例第二十五条 国際放送等の実施(~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 苦情処理**第三節　経営委員会**第二十八条 経営委員会の設置第二十九条 経営委員会の権限等第三十条 経営委員会の組織第三十一条 委員の任命第三十二条 委員の権限等第三十三条 任期第三十四条 退職第三十五条 罷免(~第三十七条)第三十八条 委員の兼職禁止第三十九条 経営委員会の運営第四十条 議決の方法等第四十一条 議事録の公表**第四節　監査委員会**第四十二条 監査委員会の設置等第四十三条 監査委員会の権限第四十四条 監査委員会による調査第四十五条 経営委員会への報告義務第四十六条 監査委員による役員の行為の差止め第四十七条 監査委員会の招集第四十八条 監査委員会の議決の方法等**第五節　役員及び職員**第四十九条 役員第五十条 理事会第五十一条 会長等(~第五十五条)第五十六条 会長等の代表権の制限第五十七条 仮理事第五十八条 利益相反行為第五十九条 仮理事又は特別代理人の選任に関する事件の管轄第六十条 会長等の兼職禁止第六十一条 給与等の支給の基準 　第六十二条 服務に関する準則 　 第六十三条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の準用 　 **第六節　受信料等** 第六十四条 受信契約及び受信料　第六十五条 国際放送の実施の要請等第六十六条 放送に関する研究第六十七条 国際放送等の費用負担**第七節　財務及び会計** 第六十八条 事業年度第六十九条 企業会計原則第七十条 収支予算、事業計画及び資金計画(~第七十一条)第七十二条 業務報告書の提出等 　第七十三条 支出の制限等第七十四条 財務諸表の提出等第七十五条 会計監査人の監査 第七十六条 会計監査人の任命第七十七条 会計監査人の権限等　第七十八条 会計監査人の任期第七十九条 会計検査院の検査第八十条 放送債券**第八節　放送番組の編集等に関する特例** 第八十一条 放送番組の編集等第八十二条 放送番組審議会第八十三条 広告放送の禁止第八十四条 放送番組の編集等に関する通則等の適用**第九節　雑則** 第八十五条 放送設備の譲渡等の制限第八十六条 放送の休止及び廃止第八十七条 解散**第四章　放送大学学園** 第八十八条 放送番組の編集等に関する通則等の適用第八十九条 放送の休止及び廃止第九十条 広告放送の禁止**第五章　基幹放送** **第一節　通則** 第九十一条 基幹放送普及計画第九十二条 基幹放送の受信に係る事業者の責務**第二節　基幹放送事業者** 第一款　認定等 第九十三条 認定第九十四条 指定事項及び認定証第九十五条 業務の開始及び休止の届出第九十六条 認定の更新第九十七条 放送事項等の変更第九十八条 承継第九十九条 認定証の訂正第百条 業務の廃止(~第百一条)第百二条 認定証の返納第百三条 認定の取消し等(~第百四条)第百五条 通知第二款　業務 第百六条 国内基幹放送等の放送番組の編集等(~第百七条)第百八条 災害の場合の放送第百九条 学校向け放送における広告の制限第百十条 放送番組の供給に関する協定の制限第百十一条 設備の維持(~第百十二条)第百十三条 重大事故の報告第百十四条 設備の改善命令第百十五条 設備に関する報告及び検査第百十六条 外国人等の取得した株式の取扱い第三款　経営基盤強化計画の認定 第百十六条の二 指定放送対象地域の指定第百十六条の三 経営基盤強化計画の認定第百十六条の四 認定経営基盤強化計画の変更等第百十六条の五 基幹放送の業務の認定等に関する特例第百十六条の六 審議機関の設置等の特例**第三節　基幹放送局提供事業者** 第百十七条 提供義務等第百十八条 役務の提供条件第百十九条 会計整理等第百二十条 変更命令第百二十一条 設備の維持第百二十二条 重大事故の報告第百二十三条 設備の改善命令第百二十四条 設備に関する報告及び検査第百二十五条 外国人等の取得した株式の取扱い**第六章　一般放送** **第一節　登録等** 第百二十六条 一般放送の業務の登録第百二十七条 登録の実施第百二十八条 登録の拒否第百二十九条 業務の開始及び休止の届出第百三十条 変更登録第百三十一条 登録の取消し第百三十二条 登録の抹消第百三十三条 一般放送の業務の届出第百三十四条 承継第百三十五条 業務の廃止等の届出**第二節　業務** 第百三十六条 設備の維持第百三十七条 重大事故の報告第百三十八条 設備の改善命令第百三十九条 設備に関する報告及び検査第百四十条 受信障害区域における再放送第百四十一条 改善命令第百四十二条 電気通信紛争処理委員会によるあつせん及び仲裁第百四十三条 政令への委任第百四十四条 裁定第百四十五条 有線電気通信設備の使用第百四十六条 届出をした一般放送事業者に対する放送番組の編集等に関する適用 **第七章　有料放送** 第百四十七条 有料基幹放送契約約款の届出・公表等第百四十八条 役務の提供義務第百四十九条 有料放送業務の休廃止に関する周知第百五十条 提供条件の説明第百五十条の二 書面の交付第百五十条の三 書面による解除(~第百五十一条)第百五十一条の二 有料放送事業者等の禁止行為第百五十一条の三 媒介等業務受託者に対する指導第百五十二条 有料放送管理業務の届出第百五十三条 承継第百五十四条 業務の廃止等の届出第百五十五条 有料放送管理業務の実施に係る義務第百五十六条 変更命令等第百五十七条 契約によらない受信の禁止**第八章　認定放送持株会社** 第百五十八条 定義等第百五十九条 認定第百六十条 届出第百六十一条 外国人等の取得した株式の取扱い第百六十二条 基幹放送の業務の認定等の特例第百六十三条 関係会社の責務第百六十四条 議決権の保有制限第百六十五条 承継第百六十六条 認定の取消し**第九章　放送番組センター** 第百六十七条 指定第百六十八条 業務第百六十九条 収集の基準等第百七十条 放送番組収集諮問委員会第百七十一条 事業計画等の提出第百七十二条 監督命令第百七十三条 指定の取消し**第十章　雑則** 第百七十四条 業務の停止第百七十五条 資料の提出第百七十六条 適用除外等第百七十七条 電波監理審議会への諮問第百七十八条 意見の聴取第百七十九条 勧告第百八十条 審査請求及び訴訟第百八十一条 総務省令への委任第百八十二条 経過措置**第十一章　罰則** **附　則** |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2조 정의**제2장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에 관한 통칙**제3조 방송프로그램 편집의 자유제4조 국내방송 등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제5조 프로그램 기준제6조 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제7조)제8조 프로그램 기준 등 규정의 적용 제외제9조 정정방송 등제10조 방송프로그램의 보존제11조 재방송제12조 광고 방송의 식별을 위한 조치제13조 후보자 방송제14조 국내외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제3장 일본방송협회****제1절 통칙**제15조 목적제16조 법인격제17조 사무소제18조 정관제19조 등기**제2절 업무**제20조 업무제21조 외국인 대상 협회국제위성방송의 업무 방식제22조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에의 출자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기간방송업무 인정의 특례제25조 국제방송 등의 실시(~제26조)제27조 고충처리**제3절 경영위원회**제28조 경영위원회의 설치제29조 경영위원회의 권한 등제30조 경영위원회의 조직제31조 위원의 임명제32조 위원의 권한 등제33조 임기제34조 퇴직제35조 파면(~제37조)제38조 위원의 겸직금지제39조 경영위원회의 운영제40조 의결 방법 등제41조 의사록의 공표**제4절 감사위원회**제42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등제43조 감사위원회의 권한제44조 감사위원회에 의한 조사제45조 경영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제46조 감사위원에 의한 임원의 행위 금지제47조 감사위원회의 소집제48조 감사위원회의 의결 방법 등**제5절 임직원**제49조 임원제50조 이사회제51조 회장 등(~제55조)제56조 회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제57조 임시이사제58조 이익저해행위제59조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의 관할제60조 회장 등의 겸직금지제61조 급여 등의 지급 기준제62조 복무에 관한 준칙제63조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6절 수신료 등**제64조 수신계약 및 수신료제65조 국제방송 실시의 요청 등제66조 방송에 관한 연구제67조 국제방송 등의 비용부담**제7절 재무 및 회계**제68조 사업연도제69조 기업회계원칙제70조 수지예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제71조)제72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제73조 지출의 제한 등제74조 재무제표의 제출 등제75조 회계감사인의 감사제76조 회계감사인의 임명제77조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제78조 회계감사인의 임기제79조 회계감사원의 검사제80조 방송채권**제8절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에 관한 특례**제81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제82조 방송프로그램심의회제83조 광고방송의 금지제84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에 관한 통칙 등의 적용**제9절 잡칙**제85조 방송설비 양도 등의 제한제86조 방송의 휴지 및 폐지제87조 해산**제4장 방송대학학원**제88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에 관한 통칙 등의 적용제89조 방송의 휴지 및 폐지제90조 광고방송의 금지**제5장 기간방송****제1절 통칙**제91조 기간방송보급계획제92조 기간방송 수신에 관한 사업자의 책무**제2절 기간방송사업자**제1관 인정 등제93조 인정제94조 지정사항 및 인정증제95조 업무의 개시 및 휴지의 신고제96조 인정의 갱신제97조 방송사항 등의 변경제98조 승계제99조 인정증의 정정제100조 업무의 폐지(~제101조)제102조 인정증의 반납제103조 인정의 취소 등(~제104조)제105조 통지제2관 업무제106조 국내기간방송 등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제107조)제108조 재해 시의 방송제109조 학교 대상 방송의 광고 제한제110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에 관한 협정 제한제111조 설비의 유지(~제112조)제113조 중대사고의 보고제114조 설비의 개선명령제115조 설비에 관한 보고 및 검사제116조 외국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급제3관 경영기반강화계획의 인정제116조의2 지정방송대상지역의 지정제116조의3 경영기반강화계획의 인정제116조의4 인정경영기반강화계획의 변경 등제116조의5 기간방송 업무의 인정 등에 관한 특례제116조의6 심의기관의 설치 등의 특례**제3절 기간방송국 제공사업자**제117조 제공의무 등제118조 서비스 제공 조건제119조 회계정리 등제120조 변경 명령제121조 설비의 유지제122조 중대사고의 보고제123조 설비의 개선명령제124조 설비에 관한 보고 및 검사제125조 외국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급**제6장 일반방송****제1절 등록 등**제126조 일반방송의 업무 등록제127조 등록 실시제128조 등록 거부제129조 업무 개시 및 휴지 신고제130조 변경 등록제131조 등록의 취소제132조 등록의 말소제133조 일반방송 업무의 신고제134조 승계제135조 업무 폐지 등의 신고**제2절 업무**제136조 설비의 유지제137조 중대사고의 보고제138조 설비의 개선명령제139조 설비에 관한 보고 및 검사제140조 수신장애구역에서의 재방송제141조 개선명령제142조 전기통신분쟁처리위원회에 의한 알선 및 중재제143조 정령에의 위임제144조 재정(裁定)제145조 유선전기통신 설비의 사용제146조 신고한 일반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등에 관한 적용**제7장 유료방송**제147조 유료기간방송계약약관의 신고·공표 등제148조 서비스 제공 의무제149조 유료방송업무의 휴·폐지에 관한 주지제150조 제공 조건의 설명제150조의2 서면의 교부제150조의3 서면에 의한 해제(~제151조)제151조의2 유료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제151조의3 매개 등 업무수탁자에 대한 지도제152조 유료방송관리업무의 신고제153조 승계제154조 업무 폐지 등의 신고제155조 유료방송관리업무의 실시에 관한 의무제156조 변경 명령 등제157조 계약에 따르지 아니하는 수신의 금지**제8장 인정방송지주회사**제158조 정의 등제159조 인정제160조 신고제161조 외국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급제162조 기간방송 업무의 인정 등의 특례제163조 관계회사의 책무제164조 의결권의 보유제한제165조 승계제166조 인정의 취소**제9장 방송프로그램센터**제167조 지정제168조 업무제169조 수집의 기준 등제170조 방송프로그램 수집자문위원회제171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제172조 감독 명령제173조 지정의 취소**제10장 잡칙**제174조 업무의 정지제175조 자료의 제출제176조 적용제외 등제177조 전파감리심의회에 대한 자문제178조 의견 청취제179조 권고제180조 심사청구 및 소송제181조 총무성령에의 위임제182조 경과조치**제11장 벌칙****부칙** |